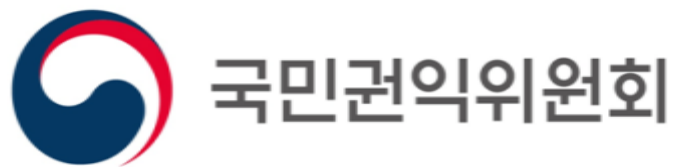


의 결

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제 1 소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3-1소위17-복03호

민원표시 2AA-0000-000000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지급 요구

신 청 인 ○○○

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

의 결 일 2023. ○. ○.

주 문

피신청인에게, 「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」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수당 금액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「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」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.

이 유

1. 신청취지
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‘사회복지사법’이라 한다) 제3조 등에 근거한 「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」(이하 ‘이 민원 가이드라인’이라 한다)에 의하면 2023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(자녀) 금액은 인상되었는데,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는 「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」(이하 ‘이 민원 지침’이라 한다)에 따라 2023년에 인상된 가족수당(자녀)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. 이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므로,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된 가족수당(자녀)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.

2. 피신청인의 주장

- 가. 피신청인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 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활 촉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고 있다.
- 나.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되었으며, 피신청인은 같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매년 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’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.
- 다. 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’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피신청인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이며, 피신청인은 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’이 준수되고 사회복지사 등에게

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예산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. 다만, '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'은 권고적 성격으로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 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.

라.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보수(봉급월액 및 각종 수당)는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, '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'을 최대한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, 예산상 한계(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예산의 경우 2023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3.6% 수준으로 책정됨. 가족수당은 전년과 동일함) 등으로 봉급월액 및 수당 등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.

3. 사실관계

가. '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'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(자녀)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.

- 2022년 : 첫째 자녀 2만원, 둘째 자녀 6만원,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
- 2023년 : 첫째 자녀 3만원, 둘째 자녀 7만원,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

나. 이 민원 지침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가족수당(자녀)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, 2022년과 2023년의 가족수당(자녀) 금액은 동일하다.

- 첫째 자녀 2만원, 둘째 자녀 6만원,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

다. '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'의 '별표 9(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종류)'에서는 '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'의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하고 있다.

4. 판단

가. 관련 법령

<별지>와 같다.

나. 판단 내용

① 사회복지사법 제3조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, ② 이 민원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한 권고기준이고, 이 민원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자활센터도 포함되는 점, ③ 이 민원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피신청인이 정한 기준으로 피신청인은 자신이 마련한 이 민원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점, ④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가족수당(자녀) 금액 차이로 인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, ⑤ 이 민원 지침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(자녀) 금액을 이 민원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

피신청인은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수당(자녀) 금액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.

5. 결 론

그러므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해 이 민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족수당(자녀)

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< 별지 >

1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,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~ ⑤ (생략)

2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)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3)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(보건복지부)

3. 적용 원칙(p3)

- 동 인건비(기본급)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,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